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임부금기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 안내

1. 관련근거 : 가.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- 256호(2012.11.21)

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 3531(2012.11.21)

2.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- 256호(2012.11.21)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(일반원칙- 병용금기, 특정 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)」에 따라 동 공고에서 추가되는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2.11.22.자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- 256호(2012.11.21)

*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 / 협회업무/ 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수신처

감, 을

대리 이재신 차장 류향수 전문위원 박상우 국장 최금숙

시행 : 보험 제 2012-626 (2012.11.22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js@kha.or.kr